



제1566호

2020년 10월 15일

목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규 칙

- 규 칙 제 1041 호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 개정규칙 2
- 규 칙 제 1042 호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2

공 고

- 공 고 제 1988 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포함) 공시송달 공고 23
- 공 고 제 1992 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8
- 공 고 제 2001 호 남동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입점업체(제품)모집 공고 31
- 공 고 제 2007 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33
- 공 고 제 2015 호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37
- 공 고 제 2016 호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44
- 보 건 소 공 고 제 94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51
- 보 건 소 공 고 제 95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 공고 52

고 시

- 고 시 제 158 호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고시 해제 고시 54
- 고 시 제 159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55

회 람								
----------------	--	--	--	--	--	--	--	--

규 칙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전
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0년 10월 15일

남동구 규칙 제1041호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복지 지원사업) ①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
하 “조례”라고 한다) 제10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

부 및 전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지원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으로 하는 사람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원사업의 기대효과
8. 지원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기금운용 재원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

다.

1. 지원사업내용의 적정여부
2.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3.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제3조(장학금의 종류 및 신청자격) ① 조례 제10조제5호에 따른 장학금의 종류는 성적장학생, 특기장학생, 모범장학생으로 한다.

② 장학생 신청자격은 선발계획 공고일 현재 남동구 관내에 주소를 둔 수급자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성적장학생 : 직전 학기 학업성적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학생
2. 특기장학생 : 직전 학년 또는 직전 학기 전국 시·도 단위 이상의 예체능 분야 및 문학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 또는 학교장이 해당분야 특기자로 추천한 학생
3. 모범장학생 : 선행, 효도, 봉사활동에 모범이 되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제4조(장학생의 선발시기 등) ① 장학생 선발은 매년 하반기 1회로 하며, 해당 연도 9월까지는 지급완료 하여야 한다.

②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각 종류별 장학금 지급인원, 지급액, 지급시기 등 장학금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금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 및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금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추천 및 선발) ① 제5조에 따른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자격을 확인한 후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장이 추천한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하며, 추천인원이 지급대상자의 인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가정, 소득이 적은 가정의 학생, 학업성적 또는 입상성적이 우수한 학생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선발한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와 함께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장학금은 장학생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제8조(장학금의 지급정지) 장학금 지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1. 정학·퇴학·제적 등 학사처분을 받았거나 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

였을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3. 다른 시·군·구로 전출하였을 경우

제9조(불우 이웃 지원사업) ① 조례 제10조제6호에 의한 대상사업은 재해, 화재, 질병, 기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그 대상세대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이와 유사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세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관할 동장은 대상세대에 대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지원요청서를 제출 받은 구청장은 당해연도 기금운용범위에서 지원방법 등을 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 학 금 신 청 서

1. 보호자 인적사항 (세대주)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2. 학생 인적사항			
학 적	학 교	학 년	반 (과)
성 명			
생년월일	(남,여)	보호자와의관계	
3. 장학구분 : ① 성적장학생(), ② 특기장학생(), ③ 모범장학생()			
4. 가구특성 및 재산사항 등			
중증장애 세대여부	1급() 2급() 중복장애등()	학생과의 관 계	
소득인정액	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인		
※ 계좌번호 : 은행명(), 번호(), 예금주()			
첨부 1. 성적장학생 : 성적증명서 2. 특기장학생 : 입상 상장 또는 학교장 추천서 3. 모범장학생 : 학교장 추천서 위와 같이 ○○○○ 학년도 남동구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을 지급받고자 신청합니다. ○○○○ 년 ○○ 월 ○○ 일 위 신청인 성명 (인)			
위와 같이 위 학생을 ○○○○ 학년도 남동구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합니다. ○○○○ 년 ○○ 월 ○○ 일 추천인 동장(직인)			
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장학생 추천대상자 명단

○○ 동

[illegible]

※ 작성요령

- ① 추천서는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구분하여 소득인정액이 낮은순으로 작성
- ② 성적장학생의 '성적점수'란은 성적증명서, 특기장학생의 '상장 또는 추천서'란은 상장 또는 학교장 추천서, 모범장학생의 '추천서'란은 학교장 추천서를 확인하여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장 학 증 서

학교 학년

성명

위 학생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므로
년도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이 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년 월 일

남 동 구 청 장

[별지 제4호서식]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번호: 제 호

피해자	주소	
	성명	생년월일

피해 내용

대상	단위	피해 규모	피해물의 소재지	피해 일시	재해의 종류

용도

제출처

위 사람이 소유(경작)하고 있던 재산에 위와 같이 피해가 있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남동구청장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 동 행정복지센터

직인

※ 이 확인서는 발급일부터 3개월간 유효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기존 성적으로 선발하였던 장학금 지급 대상범위를 예체능과 학업모범 분야 등으로 확대하여 수급자 자녀의 장학금 지급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 상위조례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장학금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지급 대상범위를 확대 : (제3조)
- 성적순이 아닌 사회적 약자 및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우선 지급대상으로 선발 : (제6조제2항)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규 칙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0년 10월 15일

남동구 규칙 제1042호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수익허가 신청)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며,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모집기간 중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사용자를 선정한 경우 선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를 사용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3조(사용·수익허가 변경 및 해지) ① 사용자가 사용·수익허가 변경 및 해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경신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사용료 등) ① 사용료는 조례 제6조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② 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전기료
2. 수도료
3. 가스료
4. 산소료
5. 해수사용료 등

③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분뇨 처리 수수료
7. 폐기물 처리 수수료
8.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등

- ④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부과한다.
- ⑤ 부과금은 개별 점포 및 편의시설의 계량기 사용량에 따라 산출한다.
- ⑥ 관리비는 운영기준 제8조에 따라 산출한다.
- ⑦ 부과금과 관리비의 부과 및 징수 방법은 구청장과 사용자 대표의 협의로 결정한다.
- ⑧ 구청장은 고지서를 납기일 7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발송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유재산 사용 · 수익허가 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 화 번 호	

⑤신청내용

재 산 의 표 시			신청면적 (㎡)	대부기간	용 도 (사 용 목 적)	사용·수익자	비 고
소 재 지	지 목	지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및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공유재산(유상, 무상) 사용·수익허가서

재산의 표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11-168

소래포구 어시장 건물 층 _m²

신청인 주소 :

성명 :

20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 . 무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별지의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20 년 월 일

남 동 구 청 장

(인)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 할 계산에 있어 1 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남동구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로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와 관련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 까지 사용기간 분의 사용료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과 관련하여 남동구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남동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남동구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남동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

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진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등) 사용허가 재산과 관련된 일체의 부과금 및 관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사용허가 재산과 관련하여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으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그 밖에 남동구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 한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남동구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변경, 해지 요청)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변경 또는 해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또는 해지 예정일부터 2개월 전까지「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남동구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남동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자는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남동구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남동구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의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는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남동구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남동구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협약) 쌍방 간의 협의로 본 허가조건 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9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남동구의 결정에 의한다.

[별지 제3호서식]

사용, 수익허가 변경 및 해지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전 화		자 택		
			점 포		
			휴대폰		
	주 소				
사용 · 수익 허가내역	시설번호(상호)				
	면적(m ²)				
	연사용료(원)				
변경사항	변경 전	(주소, 사용자)			
	변경 후	(주소, 사용자)			
휴업또는폐업 (해당사항 ○ 표시)	기 간				
	사 유				
해지사유	영업부진(), 건강(), 전업(), 기 타()				

상기 신청인은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사용·수익허가 변경 및 해지)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변경 또는 해지)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첨부 : 증빙서류 각 1부

남동구청장 귀하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소래포구 어시장의 현대화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어시장의 사용·수익허가 신청 규정 : (제2조)
- 어시장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규정 : (제4조)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0-1988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포함) 공시송달 공고

관내 장기간 무단방치 된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자진이동안내문을 발송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하나 소유주 미상으로 발송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0년 10월 8일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포함)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0.10.8. ~ 2020.10.22.
3. 공고대상 : 이륜차 11대
4. 공고내용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이동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 하지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량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소유자 미상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대상

관
리
번
호

2020-00407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0.8.25.
- 견인일 : 2020.9.14.이후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남동구 남촌동로16번길 29 덕우빌라 앞

2020-00419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0.8.31.
- 견인일 : 2020.9.21. 이후
- 보관장소 : (주)서울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인주대로591번길 56 프라임캐슬 앞 인도변

2020-00422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0.9.1.
- 견인일 : 2020.9.22.
- 보관장소 : 기전산업(주)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남동구 구월동 1350 구월문화어린이공원 녹지변

2020-00423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0.9.1.
- 견인일 : 2020.9.21. 이후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남동구 호구포로900번길 5 간석태화아파트 후문 입구 앞 도로변

2020-00424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0.9.1.
- 견인일 : 2020.9.22.
- 보관장소 : 기전산업(주)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남동구 서창동 567-4 서창5호 공영주차장 앞

소유자 미상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대상

관 리 번 호	2020-00446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0.9.15. ○ 견인일 : 2020.10.5. 이후 ○ 보관장소 : 기전산업(주)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남동구 간석동 238-9 두경요양병원 앞 전봇대
	2020-00450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0.9.16. ○ 견인일 : 2020.10.5. 이후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남동구 간석4동 255-3 지인공인중개사 주차장
	2020-00451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0.9.16. ○ 견인일 : 2020.10.5. 이후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남동구 남촌동 66번길 1 주차구획선
	2020-00452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0.9.17. ○ 견인일 : 2020.10.6. 이후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남동구 예술로198 CGV건물 건너편
	2020-00454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0.9.17. ○ 견인일 : 2020.10.6. 이후 ○ 보관장소 : (주)서울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남동구 논현동 741-3

소유자 미상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대상

관 리 번 호	2020-00455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0.9.17. ○ 견인일 : 2020.10.6. 이후 ○ 보관장소 : (주)서울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남동구 논고개로176번길 15 앞 도로변
		

이하여백

소유주 미상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내역

연번	접수번호	차량 등록번호	차명	수취인 명	주소	발송 일자	미배달 사유	방치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견인(예정) 일	보관장소	비고
1	2020-00407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촌동로16번길 29 덕우빌라 앞	2020.9.14. 이후	(주)인천폐차사업소	
2	2020-00419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인주대로591번길 56 프라임캐슬 앞 인도변	2020.9.21. 이후	(주)서울폐차사업소	
3	2020-00422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구 구월동 1350 구월문화어린이공원 녹지변	2020.9.22.	기전산업(주)폐차사 업소	
4	2020-00423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구 호구포로900번길 5 간석태화아파트 후문 입구 앞 도로변	2020.9.21. 이후	(주)서울폐차사업소	
5	2020-00424	번호판없음	트레일 러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구 서창동 567-4 서창5호 공영주차장 앞	2020.9.22.	기전산업(주)폐차사 업소	
6	2020-00446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구 간석동 238-9 두경요양병원 앞 전봇대	2020.10.5. 이후	기전산업(주)폐차사 업소	
7	2020-00450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구 간석4동 255-3 지인공인중개사 주차장	2020.10.5. 이후	(주)인천폐차사업소	
8	2020-00451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구 남촌동 66번길 1 주차구획선	2020.10.5. 이후	(주)인천폐차사업소	
9	2020-00452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구 예술로198 CGV건물 건너편	2020.10.6. 이후	(주)인천폐차사업소	
10	2020-00454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구 논현동 741-3	2020.10.6. 이후	(주)서울폐차사업소	
11	2020-00455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구 논고개로176번길 15 앞 도로변	2020.10.6. 이후	(주)서울폐차사업소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0-1992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폐업신고 절차)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의 규정에 따라 폐업사실이 확인되어 직권말소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상당 기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직권말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위반내용 참조
3. 공고기간: 2020. 10. 8.(목) ~ 2020. 10. 28.(수) (21일간)
4. 직권말소 예정일: 2020. 10. 29.(목)
5. 직권말소 예고 대상 업소

대표자	업소명	업소 소재지	처분 내용	처분 원인	직권말소 예정일
이 * 용	비바 PC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915번길 33, 106호 (간석동)	직권말소	영업폐지일부터 7일 내 폐업신고 미 이행	2020. 10. 29.(목)

6. 법적근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7. 유의사항

- ① 당사자(대표자)께서는 상기 처분 사항에 대하여 공고기간 내 남동구청에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은 직접방문 또는 팩스(032-453-2139)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② 만일 공고 기간 내 의견서 제출 및 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8. 의견제출 및 문의사항

- 제출기한: 2020. 10. 28.(수) 18:00까지
- 문의사항: 남동구청 문화관광과 문화유통팀 (☎032-453-6263)

2020년 10월 8일

남 동 구 청 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직권말소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0-2001호

남동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입점업체(제품) 모집 공고

우리구에서는 중소기업제품의 홍보와 판로를 제공하고 매출증대와 마케팅 지원을 위해 남동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하고 입점업체(제품)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10월 14일

1. 모집대상 : 남동구 소재 중소기업체의 생산제품 및 특산품
2. 판매장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11-168번지(소래포구 어시장 2층)
3. 선정기준 : 선평평가에 의한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업체 및 제품
4. 접수기간 : 2020. 10. 14. ~ 2020. 11. 5
5. 입점절차 : 신청 → 평가 → 업체선정 → 입점계약
6. 입점형태 : ①전시 ② 위탁판매 ③전시·위탁판매
7. 제출서류

가. 필수서류

- 1) 입점신청서 : '붙임'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선택서류

- 1) 제품 카탈로그 또는 사진 1부.
- 2) 특허, 실용실안, KC, KS, 성능인증 등('붙임' 신청서 참조)
- 3) 기타 참고서류 1부.

8. 신청서 접수

- 남동구 기업지원과(7층)

전화번호: 032-453-2692, Fax: 032)453-5169, E-mail: smeeting@korea.kr

9.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남동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입점 신청서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홈페이지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본사	(전화: FAX:)				
	사업장	(전화: FAX:)				
대표자			핸드폰		이메일	
담당자			핸드폰		이메일	
전자세금계산서 담당자			핸드폰		이메일	
설 립 일 자			공장등록일자		종업원수	
재무 재표	총자산	백만원	매출액	백만원		
	순이익	백만원	수출액	백만원		
입점형태		전시 ☐ 위탁판매 ☐ 전시·위탁판매 ☐				
전시 및 입점품목 * 품목수가 많은 경우 별도 첨부		제품명	규격	제품의 특성 및 용도		

위와 같이 남동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입점을 신청합니다.

20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공장등록증명(내부확인) 1부.
2. 선택서류
 - 가. 제품 카탈로그 또는 사진 1부.
 - 나. 각종 인증서(특허, 실용신안, KC, HACCP, NET, NEP, 이노비즈, 메인비즈, 성능인증, 우수조달인증, KS, CE, UL, TS16949, TL9000, FCC, RoHS 등)
3. 기타 : 심사기준 참고서류 1부.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0-2007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에 장기간 방치되어있는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 보유자는 회수·말소 등 자진처리하시고 이해관계인께서는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기 간 : 2020.10.13. ~ 2020.10.27.
2. 강제처리(폐차)일시 : 강제처리 공고이후
3. 강제처리(폐차)장소 : 첨부파일 참조
4.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
5. 공고 및 강제처리(직권폐차)대상 : 이륜차 7대
6. 유의사항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처리(자진회수)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 하지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강제처리(폐차)시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함께 처분됩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문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2)

2020년 10월 13일

남 동 구 청 장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공고 대상

관 리 번 호	2020-00286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0.7.8. ○ 견인일 : 2020.7.28. ○ 보관장소 : 기전산업(주)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남동구 고잔동 699-7 (주)동양그린 앞 인도변
	2020-00287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2대)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0.7.8. ○ 견인일 : 2020.7.28.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남동구 논곡로 78번길 26 (새진매 어린이공원)
	2020-00287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2대)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0.7.8. ○ 견인일 : 2020.7.28.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남동구 논곡로 78번길 26 (새진매 어린이공원)
	2020-00288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0.7.9. ○ 견인일 : 2020.7.30. ○ 보관장소 : (주)서울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남동구 만수5동 908-5 덕산하이츠 앞
	2020-00302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0.7.16. ○ 견인일 : 2020.8.12. ○ 보관장소 : (주)서울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남동구 성리로35번길 5 여래사 앞 전봇대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공고 대상

관 리 번 호	2020-00303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0.7.16. ○ 견인일 : 2020.8.6. ○ 보관장소 : 기전산업(주)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남동구 승기천로 146 에이엠씨코리아 앞 잔디밭
	2020-00322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0.7.20. ○ 견인일 : 2020.8.31.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남동구 논현동111-230 대영빌라 앞
		이하여백

무단방치차량강제처리(폐차)대상

연번	접수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명	소유자	명령서	사유	방치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견인일자	보관장소	연락처
1	2020-00286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구 고잔동 699-7 (주)동양그린 앞 인도변	2020.7.28.	기전산업(주)폐차사 업소	032-814-4400
2	2020-00287	번호판없음 (2대)	이륜차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구 논곡로 78번길 26 (새진매 어린이공원)	2020.7.28.	(주)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3	2020-00288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구 만수5동 908-5 덕산하이츠 앞	2020.7.30.	(주)서울폐차사업소	032-442-6660
4	2020-00302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구 성리로35번길 5 여래사 앞 전봇대	2020.8.12.	(주)서울폐차사업소	032-442-6660
5	2020-00303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구 승기천로 146 에이엠씨코리아 앞 잔디밭	2020.8.6.	기전산업(주)폐차사 업소	032-814-4400
6	2020-00322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구 논현동111-230 대영빌라 앞	2020.8.31.	(주)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0-2015호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남 동 구 청 장

1. 개정이유

- 2020.12월중 신축 공공도서관인 「남동논현도서관」이 개관 운영될 계획임에 따라 대표도서관을 변경 지정하여 도서관의 균형발전 및 구민 독서문화서비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도서 구입 시 지역 서점 우선 이용을 통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구민 독서문화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표도서관 변경(소래도서관⇒ 남동논현도서관) : 안 제5조
-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기능에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 안 제23조제6호
- 남동논현도서관 명칭 및 위치 추가 : 별표 1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1. 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남동구청장(평생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45 (만수동),
남동구청 평생학습관(3층) 평생교육과

○ 연 락 처 : 전화 453-6431 / FAX 453-5899

마. 제출서식

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4. 참고자료

- 일부개정조례안
- 신·구조문대비표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소래도서관”을 “남동논현도서관”으로 한다.

“제23조제6호”를 “제23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제4조 관련)

구 분	명 칭	위 치	비 고
대표도서관	남동논현도서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611번길 15 (논현중앙근린공원 내)	
분관	소래도서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 793	
분관	서창도서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독곡로16번길 15 (서창근린공원 내)	
분관	간석3동 어린이도서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186(3층)	간석3동 행정복지센터 내
분관	만수2동 어린이도서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46(2층)	만수2동 행정복지센터 내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구 대표도서관 지정) 남동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도서관 중 <u>소래도서관</u> 을 구 대표도서관(이하 “대표도서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제5조(구 대표도서관 지정) 남동구청장은 ----- ----- <u>남동논현도서관</u> ----- ----- -----.
제23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5.(생략)	제23조(기능) 운영위원회는 ----- ----- -----.
<신 설>	1.~5.(현행과 같음)
	<u>6.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6.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u>7.</u> ----- ----- -----

[참고자료]

□ 도서관법 시행령

제15조(지역대표도서관 설립·운영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이나 그 밖의 공공도서관 중 하나를 지정하여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지역서점 독서문화 지원) ① 시장은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 인천광역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지역서점 독서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6.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0-2016호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남 동 구 청 장

1. 개정이유

○ 2020.12월중 신축 공공도서관인 「남동논현도서관」이 개관 운영될 계
획임에 따라 도서관 정기휴관일 및 운영시간을 일부 개정하여 구민의 도서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남동논현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을 금요일로 지정하여 소래도서관을 포함한
4개 구립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인 월요일에도 도서관 이용을 가능하게 함
월요일 ⇒ 월요일(남동논현도서관은 금요일) : 안 제5조제1항제1호
- 남동논현도서관 운영시간 추가 : 별표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1. 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남동구청장(평생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45 (만수동),
남동구청 평생학습관(3층) 평생교육과

○ 연 락 처 : 전화 453-6431 / FAX 453-5899

마. 제출서식

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4. 참고자료

○ 일부개정규칙안

○ 신·구조문대비표

남동구 규칙 제 호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월요일”을 “월요일(남동논현도서관은 금요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도서관 이용시간 (제4조 관련)

구 분	명 칭	실 명	운영시간
대표도서관	남동논현도서관	자 유 열 람 실	08:00 ~ 22:00
		종 합 자 료 실	09:00 ~ 22:00
		어린이자료실	09:00 ~ 18:00 (수요일 20:00까지)
		멀티미디어실	09:00 ~ 18:00
분관	소래도서관	자 유 열 람 실	06:00 ~ 22:00
		어린이자료실	09:00 ~ 18:00 (수요일 20:00까지)
		종 합 자 료 실	09:00 ~ 22:00
		디지털자료실	09:00 ~ 18:00
분관	서창도서관	자 유 열 람 실	06:00 ~ 22:00
		어린이자료실	09:00 ~ 18:00 (수요일 20:00까지)
		종 합 자 료 실	09:00 ~ 22:00
		디지털자료실	09:00 ~ 18:00
분관	간석3동 어린이도서관	어린이자료실	09:00 ~ 18:00 (주말 09:00~17:00)
분관	만수2동 어린이도서관	어린이자료실	09:00 ~ 18:00 (주말 09:00~17: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관일 : <u>월요일</u> 2. ~3. (생략)	제5조(휴관일) ① ----- -----. 1. ----- : <u>월요일(남동논현도서관은 금요일)</u> 2. ~3.(현행과 같음)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참고자료]☐ **도서관법 시행령**

제15조(지역대표도서관 설립·운영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이나 그 밖의 공공도서관 중 하나를 지정하여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9조(도서관 운영) ①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이 한다.

② 도서관의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도서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20-94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20.10.27.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20.10.12. ~ 2020. 10.26.(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 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말소예정일)
식품제조가공업	2012-0199626	위플랜	박*영	인수북로 13-8, 1,2층(만수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0.8.7	2020.10.27

6. 고지사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20.10.26. 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4

2020년 10월 12일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공 고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20-95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 권 말 소 일 자 : 2020. 10. 13.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20. 10. 13. ~ 2020. 10. 27.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말소예정일)
유통전문판매업	2015 -0199087	쿡쿡차차	이**	석촌로14번길 3, 지1층(간석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7-12-31	2020-10-13
유통전문판매업	2016 -0199108	간지우동	정**	경인로613번길 40, 2층(간석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0-01-07	2020-10-13
유통전문판매업	2016 -0200354	(주)비씨엘아이 앤씨	최**	예술로172번길 9, 902호(구월동, 룩소르빌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6-06-30	2020-10-13
유통전문판매업	2019 -0202297	웅이가F&D	김**	음실로 95, 1층(운연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0-05-01	2020-10-13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2019 -0202415	레몬비 래미안자이점	김**	석산로 166, 간석래미안자이아파트 상가2동 102호(간석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0-03-19	2020-10-13

6. 고지사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남동구보건소 식품위생과 유통식품팀
☎ (032)453-2753

2020년 10월 13일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고 시

남동구 고시 제 2020-158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 금지 고시 해제 고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고시한 집합 금지 고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제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남 동 구 청 장

1. 해제 고시명

가. 남동구 고시 제2020-46호 :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 금지 고시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0-159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아산로 67 (만수동) 외 2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327번길 16 (만수동) 외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램 (4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4)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 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산81-3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아산로 67 (만수동)	20091116	옛날에 장군이 숨어있었다는 산의 유래를 인용하여 제명	20201014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장아산로 67 기초구간에위치하여67을건물번호로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24	인천광역시 남동구 복개동로56번길 14 (만수동)	20091116	복개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01014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복개동로56번길 14 기초구간에위치하여14를건물번호로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11-7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611번길 15 (논현동)	20091116	청능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12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01014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청능대로611번길 15 기초구간에위치하여15를건물번호로부여	남동논현 도서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24-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327번길 16 (만수동)	2020.10.14.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24	인천광역시 남동구 복개동로56번길 14 (만수동)	2020.10.14.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24-2	인천광역시 남동구 복개동로56번길 16 (만수동)	2020.10.14.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25	인천광역시 남동구 복개동로56번길 16-1 (만수동)	2020.10.14.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